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6년 제11차 이사회 회의록

소집통보일	2026.9.8.(화)		
구 분	이 사	감 사	계
임원정수	9명	2명	11명
재적임원	9명	2명	11명
참 석	9명	2명	11명
불 참	0명	0명	0명

1. **일 시** : 2026.9.17.(목) 14:00 ~ 17:54

2. **장 소** : 조선대학교 본관 2층 법인회의실(2137호)

3. **임원 참석 현황**

- 참석 임원
  - 이사 : 이사장 안병욱, 이사 김선아, 이사 신윤숙, 이사 이근우, 이사 김성재, 이사 박미경, 이사 정채웅, 이사 김규탁, 이사 고길석 (이상 9명)
  - 감사 : 감사 이현필, 감사 김정희 (이상 2명)
- 불참 임원
  - 없 음

4. **배석 현황**

- 법 인 사 무 처 : 사무처장 정권철, 사업운영팀장 및 안전관리팀장 고청, 기획감사팀장 박승모
  (법인팀 윤진혁은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배석함)
- 조 선 대 학 교 : 총장 김춘성, 기획처장 최홍석, 교무처장 강혁신, 총무관리처장 김영묵, 대학원장 김도경, 교원인사팀장 송병준, 건축안전환경팀장 문제환
- 조선이공대학교 : 총장 이응재, 기획처장 황영국, 교무입학처장 이윤기, 기획예산팀장 손용준
- 중·고등학교 : 부속고등학교 교장 김종채, 여자고등학교 교장 천일석, 부속중학

교 교장 박충훈, 여자중학교 교장 채현석, 부속고등학교 행정실장 장홍철, 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 김성근, 부속중학교 행정실장 한강, 여자중학교 행정실장 노정아

5. 심의 · 의결 안건

(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2026학년도 제1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2026학년도 제1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2026학년도 제1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2026학년도 제1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조선간호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

(6) 조선대학교 건축물(서석홀) 증축 계획 변경(안)

(7)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

(8) 조선대학교 교육용기본재산(토지) 처분(안)

(9) 조선대학교 고정자산(차량운반구) 폐기(안)

(10)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

(11) 조선이공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12) 조선이공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임금협약(안)

(13)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14) 호남권역재활병원 수탁(안)

(15)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수익용기본재산(토지) 처분 계획 변경(안)

(16)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사회 운영방안 논의

(17)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

6. 보고 사항

(1) 조선대학교 대학원 학과 신설 및 폐과보고

(2) 산하학교 교원 임용보고

(3)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임기만료 보고

7. 회의 내용

■ **성원보고 및 개회 선언** : 정권철 사무처장이 성원을 보고(이사 9명, 감사 2명 출석)하자, 안병욱 이사장이 이를 확인하고 「정관」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에 의거하여 개회를 선언하다.

■ **전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 : 정권철 사무처장이 전차 이사회 회의록의 주요 결의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안병욱 이사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물어 이의 없음을 확인하다.

1호 의안.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2026학년도 제1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 김종채 교장이 기정 예산액 8,009,466천원보다 1,042,105천원 증액된 9,051,571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2026학년도 제1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9,051,571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함

2호 의안.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2026학년도 제1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 천일석 교장이 기정 예산액 8,015,500천원보다 528,436천원 증액된 8,543,936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2026학년도 제1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8,543,936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함

3호 의안.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2026학년도 제1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 박충훈 교장이 기정 예산액 4,269,078천원보다 914,658천원 증액된 5,183,736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2026학년도 제1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5,183,736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함

4호 의안.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2026학년도 제1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 채현석 교장이 기정 예산액 3,825,467천원보다 1,300,643천원 증액된 5,126,110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2026학년도 제1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5,126,110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함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안은 동일한 성격의 안건으로 일괄 심의함.

논의 내용 :

① 이현필 감사는 본예산 대비 추경 증감 규모가 크고 특히 부속중학교와 여자중학교의 증가 폭이 큰 점을 지적하며,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는지와 구조적 개선 가능성을 질의함. 이에 박충훈 교장은 교육청 공모사업(도서관 설치, AI 교실 등)이 학기 시작 이후에 선정·교부되어 사전 예측이 어렵다고 답변하였고, 김종채 교장은 학기 중 질병휴직·교육청 파견 등에 따른 기간제교사 채용으로 인건비가 증가하는 요인이 있다고 답변함

② 김성재 이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및 고등·평생교육으로의 재원 전환 방침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 증액이 교부금 소진 차원의 배분은 아닌지 질의하였고, 천일석 교장은 본예산 편성 시기(1월)와 학기 시작 시기(3월)의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요인이며 향후 교육청 예산 감소에 따라 학교에 추가 투입되는 재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함

③ 안병욱 이사장이 여자중학교의 증액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유를 질의하였고, 채현석 교장은 4개교 중 본예산 규모가 가장 적은 가운데 창호 교체 6억원, 급식실 환기시설 3억원 등 목적사업비 약 13억원이 교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답변함.

④ 김선아 이사는 AI 선도학교 등으로 선정된 학교의 경우 유료화된 AI 도구를 학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구입과 교육청 협의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천일석 교장은 고등학교의 경우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함

< 김종채 교장이 2026년 교육청 사학기관 운영 평가에서 산하 4개 중·고등학교가 모두 우수기관(최우수 2개교, 우수 2개교)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하고, 임원들이 이에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함 >

5호 의안. 조선간호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

제안 설명 : 심정신 교학처장이 본 안건은 2025년 제9차 이사회(2025.10.23.)에서 인권센터 조사자료·참고인 진술서 등 인권침해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재상정하도록 하였고, 2025년 제10차 이사회(2025.12.18.)에서는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신고인과 피신고인 간의 1심 판결 결과를 확인한 후 징계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심의를 보류하였던 사안으로, 2026년 8월 25일 광주지방법원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설시한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 징계 제청 : [redacted]

논의 내용 :

① 안병욱 이사장이 판결의 확정 여부를 질의하였고, 심정신 교학처장이 1심 판결 이후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답변함.

② 정채웅 이사가 판결문이 인권위원회의 판단은 객관적 증거보다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고, 법률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 법원

이 모든 쟁점을 상세히 판단하여 다른 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성적을 평가하였다고 본 이상 이사회가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며, 현 단계에서는 징계 제청(안)을 부결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함.

③ 김규탁 이사가 6차에 걸쳐 재시험을 실시한 경위를 질의하였고, 심정신 교학처장이 4학년 학생을 최대한 구제하기 위하여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재시험 대상 약 20명 중 원고만 최종 통과하지 못하였으며, 성적사정회 일정상 6차까지만 가능하였다고 답변함. 김규탁 이사가 성적 평가는 교수의 고유 권한이고 수차례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통과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신고인의 주장이 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④ 안병욱 이사장이 1심 판결이 쟁점을 상세히 판단한 만큼 이사회에서 더 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논의를 마무리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간호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부결하다.

6호 의안. 조선대학교 건축물(서석홀) 증축 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 : 최홍석 기획처장이 2025년 제10차 이사회(2025.12.18.)에서 의결된 서석홀 증축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글로컬대학사업 3대 특성화 중 라이프케어 클러스터 거점센터 공간 구축과 IT융합대학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및 AI중심대학 선정에 따른 강의실·실습공간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어 증축 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며, 1층은 라이프케어대학 행정공간(교학팀·통합학과실·학장실 등), 3·4층은 회의실 및 상담심리학과·언어치료학과 실습실, 5층은 교수연구실(약 10실)로 구성을 변경하고, 기존 IT융합대학 5층의 상담심리학과·언어치료학과 공간(783㎡)은 IT융합대학 소속 학과의 강의실·실습실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내용 등 주요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 내용 :

① 김규탁 이사가 증축 위치를 질의하였고, 최홍석 기획처장이 서석홀 바로 옆에 이어서 증축하는 것이라고 답변함. 안병욱 이사장이 2027년 9월 준공 가능성을 질의하였고,

최홍석 기획처장은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실시 설계 단계로 다소 빠듯하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변함

② 신윤숙 이사가 층수 증가에 따른 안전 검사 필요 여부를 질의하였고, 최홍석 기획처장은 기존 건물 위에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필로티로 계획한 1층을 사용 공간으로 하여, 1개층을 추가하는 설계 변경이므로 안전 검사와는 무관하다고 답변함

③ 김선아 이사는 현재도 서석홀 인근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축으로 상주 인원이 늘어나면 주차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고길석 이사는 증축 면적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 확보 요건을 질의함. 이에 김춘성 총장이 대학은 개별 건물이 아닌 대학 전체를 기준으로 주차면을 산정하므로 이번 증축에 따른 별도의 법정 확보 의무는 없다고 답변하였음. 이어, 문제환 건축안전환경팀장이 백학학사 지하주차장 등으로 분산 유도하고 서석홀 앞 광장 등의 활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차 공간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부연 설명함

④ 박미경 이사는 대학 전체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한 만큼 증축 건물에서 주차면을 일부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과, 당초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판단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표명하며 2027년 9월 준공이 필수적인지를 질의하였고, 최홍석 기획처장이 국비 사업인 글로컬대학사업 3차년도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3주기 마지막 해인 2027년 내 완공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⑤ 안병욱 이사장은 사업 추진 일정상 증축 계획 변경을 미룰 수 없으므로 의결하되, 주차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여 추후 이사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건축물(서석홀) 증축 계획 변경(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건축물(서석홀) 증축 계획 변경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보고사항 1. 조선대학교 대학원 학과 신설 및 폐과 보고

보고 내용 : 김도경 조선대학교 대학원장이 대학원 학칙 제19조 및 대학원 학사 규정 제

19조(최근 2년간 입학생이 없거나 최근 5년간 재학생 3명 이하로 운영된 학과는 폐과 원칙)에 따라 일반대학원 식품의약학과와 미래인재융합대학원 전기기술융합공학과를 폐지하고,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에 따른 융합형 교육체계 구축을 위하여 일반대학원에 라이프케어융합학과, 바이오메디융합학과, 에이지테크융합학과 3개 학과를 석사·박사과정에 신설하여 석사과정은 73개에서 75개 학과로, 박사과정은 76개에서 78개 학과로, 미래인재융합대학원은 13개 학과로 운영하며, 신설 융합학과의 수여 학위 종별을 <별표 2>에 반영하였다는 내용 등 대학원 학과 폐지 및 신설 내용에 대해 보고함

논의 내용 :

① 박미경 이사가 전기기술융합공학과의 입학생 감소 사유와 특수대학원 통합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폐과하는 경위를 질의하였고, 김도경 대학원장이 유사 학과가 일반대학원에 있어 학생들이 장학금이 많고 주간에 수업하는 일반대학원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해당 학과 교수들도 일반대학원에 전념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함. 이어, 김춘성 총장이 특수대학원 간 통합(미래인재융합대학원으로의 통합) 취지가 수요 맞춤형으로 학과를 신속히 신설·폐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② 김선아 이사는 나주 소재 전력 관련 기관 종사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현지 야간 강의 개설 등을 검토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 김도경 대학원장은 특수대학원은 박사과정이 없어 석·박사 연계 수요에 부합하지 않고 교수 파견 강의에 따른 재정 부담이 있어 계약학과 형태의 운영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함

③ 안병욱 이사장이 학과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각 학과에서 작성한 보고 내용이 원론적인 내용이고, 특히 라이프케어융합학과의 경우 교과목 구성이 명칭과 부합하지 않으며 광주·전남의 문화적 역량(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활용 방안이 담겨 있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향후 대학에서 이사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보다 내실 있게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함

결의 사항 : 조선대학교 대학원 학과 신설 및 폐과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함

7호 의안.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

제안 설명 : 강혁신 교무처장이 2026년 9월 의원면직을 신청한 전임교원 2명에 대하여 「정관」 제45조의4(의원면직의 제한)에 따른 사전 승인(2026. 8. 28.)을 거쳐 면직을 제청하고자 하는 내용 등 주요 제청 사유 및 제청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 조선대학교 면직(의원면직): [redacted]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보고사항 2. 산하학교 교원 임용보고

보고 내용 : 강혁신 교무처장이 「정관」 제40조(임용) 등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교원을 임용하였다며 임용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함

- 조선대학교 재임용: [redacted]
- 조선대학교 승진: [redacted]
- 조선대학교 정년보장: [redacted]

보고 내용 : 정권철 사무처장이 「정관」 제40조(임용) 등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교원을 임용하였다며 임용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함

-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휴직: [redacted]
-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파견: [redacted]
-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redacted]
-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복직: [redacted]
-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redacted]

-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redacted]

논의 내용 :

① 안병욱 이사장은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가 진로진학상담 담당 교사를 대체할 기간제교사로 스페인어 전공자를 임용한 것에 대하여, 진로상담은 경험이 많은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의 형식적 운영에 아쉬움을 표명함. 정권철 사무처장은 교육청 지침상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표시과목과 무관하게 임용이 가능하고 단기 기간제 지원자가 3명에 불과하였다고 설명하며, 이를 보완하도록 학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답변함

② 김선아 이사는 향후 상담 관련 교사를 임용할 때에는 교사 자격증 외에 한국코치협회 코치 자격증 등 관련 자격의 보유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함

결의 사항 : 산하학교 교원 임용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함

8호 의안. 조선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처분(안)

제안 설명 : 김영묵 총무관리처장이 동구 학동 숙실마을 소재 교육용 기본재산 학동 산31(78,446㎡) 중 경사지 토사 유실에 따른 재난 피해 우려와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하여 동구청이 도로 개설 및 사면 공사를 추진하면서 매입을 요청한 산31-2(397㎡) 및 산31-3(257㎡) 토지에 대하여, 동구청과 대학이 각각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의 산술평균값에 따라 산31-2는 66,993,750원, 산31-3은 43,741,400원 등 총 110,735,150원에 매각하고자 하며, 해당 토지는 대학 시설지구 밖의 임야로 교육·연구용 활용 가치가 낮고 법인 기본재산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내용 등 주요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처분(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9호 의안. 조선대학교 고정자산(차량운반구) 폐기(안)

제안 설명 : 김영묵 총무관리처장이 교내 셔틀버스로 운행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20일 취득한 대형승합 뉴그랜버드 차량(74다9077, 취득금액 117,770천원, 주행거리 664,527km)이 노후화에 따른 안전상 위험과 과다한 수리비용이 예상되어 신차로 대체하고,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 등 주요 폐기 사유 및 처분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 내용 : 안병욱 이사장이 주행거리 66만km가 통상적인 수준인지 질의하였고, 김영묵 총무관리처장이 다소 노후된 상태에 해당하며, 향후에도 노후 차량들을 순차적으로 교체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 고정자산(차량운반구) 폐기(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고정자산(차량운반구) 폐기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10호 의안.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

제안 설명 : 황영국 기획처장이 2026년 제10차 이사회(2026.8.20.)에서 보류된 조직체계 개편안을 전차 이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으로, 총장 직속으로 대학전략실과 준법경영지원실을 신설하고 교무처(교무학사팀, 직업교육혁신원 및 그 산하 교육혁신센터·교수학습지원센터), 기획처(기획예산팀, 대학성과IR센터, 대외협력홍보센터), 학생입학처(입학장학팀, 학생성장개발원 및 그 산하 학생지원센터·학생상담센터·장애학생지원센터·인권센터), 산학취업처(산학지원팀, 취업지원팀, 산학인재개발원 및 그 산하 진로창업지원센터·현장실습지원센터), 총무처(총무팀, AI자산정보팀)와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을 두며, 대학전략실장과 준법경영지원실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각 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각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여 소관 원장을 겸직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과, 당초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제110조(정원) <별표 1>의

일반직원 5급 이하 정원 직종 구분 삭제 및 직급군별 정원 통합 사항은 현행 정원 체계에서도 필요한 인력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현행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내용 등 주요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 제10호 의안과 제11호 의안은 상호 연계된 사항으로 일괄 심의함.

논의 내용 :

① 정채웅 이사는 전차 이사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반영되어 교육혁신처·미래인재개발처 등 업무를 알기 어려웠던 명칭이 교무처·학생입학처로 변경되었고, 조직체계 개편안 자체는 신임 총장이 조선이공대학교의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마련한 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의문이 있었던 제110조 정원 개정 사항은 대학 측이 철회하였으므로 별도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겠다고 밝힘.

② 김선아 이사는 대학전략실·준법경영지원실의 기능은 기획처와 대학 감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처 아래에 팀과 별도로 원(院)과 센터를 두는 구조에서 처장·원장·센터장의 역할 구분이 무엇인지,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를 부속기관으로 둔 이유,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장을 산학취업처 산학지원팀장이 겸직하는 구조의 업무 과중 여부,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 인력 등을 질의하며 조직이 방만하게 구성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황영국 기획처장은 대학전략실은 기획처와 산학협력단의 성과관리를 통합 조정하는 총장 직속 기구이고, 원장은 처장을 보좌하는 부처장과 달리 센터 간 사업 조정·공동 KPI 관리·중장기 전략 수립을 수평적으로 통할하며 특정 사항은 원장 전결로 처리하여 결재 단계를 줄이려는 것이며,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는 재정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속기관으로 두는 것이고, 산학지원팀장 겸직은 정규 직원이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에 근무하기 위한 연결 구조이며,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계약직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답변함. 이응재 총장이 준법경영지원실은 종전 기획실의 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것으로 신규 인원 충원 의도는 없다고 부연설명함

③ 신윤숙 이사는 원이 신설되어 결재 라인이 길어지는 비효율이 우려되나 센터 간 연계·통합 관리의 의미는 있으므로 운영 결과에 따라 센터를 통합하는 등 효율적인 방

향으로 보완할 것과, 인권센터는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전체의 인권을 다루므로 학생성장개발원 산하가 아닌 부속기관으로 두어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 진로창업지원센터와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를 원스톱으로 연계할 것을 제안함. 박미경 이사가 인권센터의 독립기구화에 동의하고 기존 부속기관인 사회봉사단의 처리를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함(사회봉사단은 대외협력홍보센터로 통합)

④ 이근우 이사는 원장을 부처장이 겸직하는 구조라면 굳이 원이라는 단위를 두지 않고 부처장이 각 센터를 직접 통할하여도 기능상 동일하지 않은지 질의하였고, 김성재 이사는 부처장이 원 산하 센터 업무를 전담하고 처장이 팀 업무를 관할하는 역할 분담 구조로 이해해도 되는지 질의함. 황영국 기획처장이 부처장은 처장 업무를 수직적으로 분담하는 반면 원장은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고 전결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응재 총장이 교무위원회와 교수회의에서 충분히 설명하여 구성원의 공감을 얻었으며 이는 관리 중심에서 성과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⑤ 이응재 총장이 2026년 9월 4일 호남권 최초로 반도체 선도대학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2026년 국고사업 수주액이 전년 대비 약 28억원 증가하였으며 전문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초강력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에 선정되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⑥ 이현필 감사는 조직 운영에서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며, 준법경영지원실 등 감사 관련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산학협력단 운영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사업비 집행 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함. 김정희 감사는 조직이 세분화되면 실무 인력이 부족한 팀장·센터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총장의 의지와 복안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⑦ 안병욱 이사장은 두 차례에 걸쳐 장시간 논의가 이루어졌고 더 미룰 경우 이번 학기 적용이 어려운 점, 제기된 지적 사항은 모두 타당하나 총장이 책임지고 운영하겠다는 신뢰 하에 가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학기 시행 결과를 보아 미비한 점은 내년 신학기에 보완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정채웅 이사는 기존 인력 범위 내에서 조직체계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함

11호 의안. 조선이공대학교 직제 규정 개정(안)

제안 설명 : 황영국 기획처장이 조직체계 개편에 관한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과 연계하여 「직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보칙까지 장명 및 장을 신설하여 규정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제4조(총장)에 총장 직속 대학전략실·준법경영지원실 및 각 실장에 관한 항을 신설하는 등 개편된 조직체계와 실장·처(단)장·부처(단)장·원장·센터장·팀장 등 보직 관련 사항을 명시하며, 기존 및 신설 특별사업기구를 제21조(혁신지원사업단)부터 제21조의10(직업계고선도대학사업단)까지 조문으로 신설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 등 주요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이공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직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함

12호 의안. 조선이공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임금협약(안)

제안 설명 : 황영국 기획처장이 2026년 제10차 이사회에서 보류되었던 조선이공대학교와 직원노동조합의 2026학년도 임금 협약안으로, 2026학년도 기본급은 2026년 9월부터 2026년 「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은 2026학년도에 한하여 본봉의 130%로 하되 2027학년도부터는 110%로 하며, 급식비는 2026년 9월부터 월 150,000원에서 16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 등 주요 협약 사유 및 협약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이공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임금협약(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2026학년도 임금협약 합의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13호 의안.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제안 설명 : 황영국 기획처장이 2026학년도 임금 협약에 따라 「교직원 보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4조(교직원의 봉급) <별표 2> 직원 봉급표에 2026년 「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여 2026년 9월부터 시행하고, 제18조(급식비) <별표 10>을 직원에 대하여 2026년 9월부터 적용하는 부칙을 신설하며, 제7조(성과상여금) 제1항에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부를 8월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21조(기타수당) 제4항에 '총장은 재정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관리운영수당과 성과급을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를 포함하여 상위법령과 내부지침에서 정한 집행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 등 주요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 내용 :

① 정채웅 이사가 제7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는 이유를 질의하였고, 황영국 기획처장은 2026년 8월에 성과상여금을 앞서 논의한 임금 협약(안) 상의 기본급의 130%가 아닌 종전 기준인 110%로 지급하여 인상분 20%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함. 정채웅 이사는 성과상여금은 임금의 일부이므로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하며 단서 규정은 당연한 내용이라는 의견을 밝힘

② 이현필 감사는 제21조 제4항과 관련하여 과거 집행 사례를 보면 국고재정지원사업 재원의 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이 일부 구성원에게 집중되어 구성원 간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하고 조직 동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권철 사무처장은 실태 점검 결과 산학협력단 사업관리수당·성과급·시간외수당이 특정 팀장 등에게 다수 사업에 걸쳐 중복 지급되었으므로, 보직수당을 최상위 보직 1

건에 한해 지급하는 것과 같이 지급 기준을 규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③ 안병욱 이사장은 제21조 제4항은 보류하고, 한 사람이 여러 사업의 수당을 중복하여 받는 구조가 불가피하다면 그 사유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 기준을 명확히 보완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정리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함

14호 의안. 호남권역재활병원 수탁(안)

제안 설명 : 고청 사업운영팀장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호남권역재활병원의 위·수탁 협약이 2027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2026년 10월 1일까지 재수탁 희망원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며, 주요 제안 사유 및 제안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 내용 :

① 재수탁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적자가 장기간 누적되어 왔고 지자체의 적자 보전 및 고용 승계 조항의 개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법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될지 의문임

③ 재수탁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재활병원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하나 공공의료의 역할과 지역사회 기여, 통합특별시와의 협력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재무 부담이 없다면 협약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재수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아울러 수탁 종료 시 고용 승계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 현 재활병원 인건비 구조에 대한 분석 필요성, 현 병원장의 헌신에 의존하는 운영 구조의 지속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③ 안병욱 이사장이 양측 의견을 종합하여 지역사회 기여 차원에서 우리 법인이 재활병원을 계속 수탁하는 것이 법인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편이나 운영비 보조 책임 등 우리 법인이 안아야 할 재정적 의무와 이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2026년 9월 30일까

지 재수탁 희망원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논의를 마무리함. 이어 정권철 사무처장이 잔여 수탁기간은 2027년 2월까지임을 덧붙여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호남권역재활병원 수탁(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재수탁 희망원을 제출하지 않기로 의결함

15호 의안.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 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 : 고청 사업운영팀장이 2026년 제4차 이사회(2026. 4. 23.)에서 의결하고 교육부 처분 신고까지 수리된 해남군 소재 수익용 기본재산 7필지(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편입)의 처분 계획에 대하여, 해남군의 정식 측량 및 감정평가 재실시 결과 편입 면적이 소수점 단위로 분할되지 않음에 따라 처분 면적을 748.7㎡에서 747.0㎡로, 보상금액을 10,769,660원에서 10,740,250원으로 변경하고, 처분금은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수익용 예금 예치)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 등 주요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수익용기본재산(토지) 처분 계획 변경(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 계획 변경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보고사항 3.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임기만료 보고

보고 내용 : 정권철 사무처장이 이현필 감사(공인회계사)의 임기가 2027년 1월 17일 만료됨에 따라 「정관」 제24조 제4항에 의거, 2026년 제12차 이사회(2026. 10. 22.)에서 후임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립학교법」 제21조 제6항 및 「정관」 제25조 제5항에 따라 후임 감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기는 2년이라는 내용 등 감사 선임 일정에 대해 보고함

결의 사항 :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임기만료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함

16호 의안.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사회 운영방안 논의(안)

제안 설명 : 안병욱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정채웅 이사가 2026년 9월 11일 법인(정채웅 이사, 정권철 법인사무처장),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동창회, 총학생회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국립화 실무추진단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점과, 동 회의에서 추진단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추진단 구성을 위한 준비 모임인 실무추진단에서 추진단의 구성 범위(시민사회단체 포함 여부 등)와 국립화 추진 로드맵 및 입법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관련 경비는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 등 국립화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함

논의 내용 :

① 2027년부터 지방 국립대학의 등록금이 전액 면제되고 거점국립대학에 연간 800억~1,000억원이 지원되는 정부 정책이 사립대학의 신입생 모집과 존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사립대학도 자구 노력을 전제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② 조선대학교의 국립화는 특정인이 아닌 법인·대학·구성원 모두가 함께 추진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사심 없이 토의하여 대처하고 구성원 설득과 내부 준비를 병행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사회 운영방안 논의는 사립대학의 위기에 대하여 이사회의 대응 방향을 계속하여 논의해 나가기로 의결함

17호 의안.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

제안 설명 : 정권철 사무처장이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로 안병욱 이사장, 김선

아 이사, 이근우 이사를 선정하기로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안병욱 이사장, 김선아 이사, 이근우 이사가 날인하기로 가결함

폐회 선언

폐회 선언 : 안병욱 이사장이 더 이상의 질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함

【결 의 사 항】

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2026학년도 제1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9,051,571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2.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2026학년도 제1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8,543,936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3.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2026학년도 제1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5,183,736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4. 조선대학교여자~~고등~~중학교 2026학년도 제1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5,126,110천원으로 편성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 4번 "여자고등학교"는 "여자중학교"의 오기로 정정 표시함

5. 조선간호대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부결하다.

6. 조선대학교 건축물(서석홀) 증축 계획 변경(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건축물(서석홀) 증축 계획 변경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7.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8. 조선대학교 교육용기본재산(토지) 처분(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처분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9. 조선대학교 고정자산(차량운반구) 폐기(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 고정자산(차량운반구) 폐기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0.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다.

11. 조선이공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직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다.

12. 조선이공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임금협약(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2026학년도 임금협약 합의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3.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개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다.

14. 호남권역재활병원 수탁(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재수탁 희망원을 제출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15.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수익용기본재산(토지) 처분 계획 변경(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처분 계획 변경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6.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사회 운영방안 논의는 사립대학의 위기에 대하여 이사회의 대응 방향을 계속하여 논의해 나가기로 의결하다.

17.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안병욱 이사장, 김선아 이사, 이근우 이사가 날인하기로 가결하다.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함.

2026. 9. 17.

이	사	장	안 병 욱
이		사	김 선 아
이		사	신 윤 숙
이		사	이 근 우
이		사	김 성 재
이		사	박 미 경
이		사	정 채 웅
이		사	김 규 탁
이		사	고 길 석
감		사	이 현 필
감		사	김 정 희